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3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김희정·서일준·박성민

백종헌 • 박준태 • 김승수

김태호 • 이인선 • 임이자

서지영 · 김은혜 · 곽규택

정성국 · 송석준 · 이철규

구자근 · 강대식 · 정연욱

박정하 • 이성권 • 권영진

진종오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 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

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 중 최초 10일"로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에"를 "경우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산·사산휴가, 아이맞이 아빠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 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u>배우자 출산휴가</u> 를	<u>아이맞이 아빠휴가</u>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	<u>난임치료휴가</u>
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	
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	
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u>기간 중 최초 5일</u>.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u>경우에</u> 한정한다.

<신 설>

②・③ (생 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후가"로 본다.

2
<u>기간 중 최초 10일</u>
경우로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
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
 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u> </u>
산・사산휴가, 아이맞이 아빠휴
가 또는 난임치료휴가